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-47호

「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2년 5월 25일

부 산 광 역 시 장

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**조 례 명** :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변화된 저출산 대응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하기 위해 출산장려계정 관련 용어 정리 및 자금 사용 용도를 추가하고,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청소년정책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육성계정의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기금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4장 제목)

○ 출산장려계정 용어 변경에 관한 사항(안 제41조, 제45조)

○ 출산장려계정 자금사용 용도 수정 및 추가(안 제42조)

○ 청소년육성계정 지출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43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(아동청소년과,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동청소년과(전화 : 051-888-1626, FAX : 051-888-1629, E-mail : gashank1@korea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성·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5. 기타사항

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(http://www.busan.go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(부산광역시 홈페이지 : 분야별정보 → 행정→ 법무행정 → 자치법규 → 입법예고)

붙임1 「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
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호 중 “부산광역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”을 “부산광역시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제4장의 제목 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”을 “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”으로 한다.

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산장려,”를 “출산지원,”으로, “부산광역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”을 “부산광역시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출산지원계정

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출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출산·양육에 관한 지원금
2. 임신·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 및 지원
3. 임신·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조성 관련 단체(기관) 등의 사업 지원

4.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

5.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

6. 그 밖에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45조제1항제2호나목 중 “출산장려계정”을 “출산지원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출산지원계정 : 출산업무담당사무관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출산장려계정”을 “출산지원계정”으로 한다.

제3조(기금계정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조례 제 6029호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출산장려계정은 이 조례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산지원계정으로 본다.

작성 **신·구조문대조표**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1. ~ 5. (생 략) 6. 부산광역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 7. ~ 10. (생 략)	제8조(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부산광역시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 ------- 7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4장 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	제4장 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
제41조(설치 및 자금 구분)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, 한부모가족 지원, 출산장려,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출산장려및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.	제41조(설치 및 자금 구분) ① ----------. --- 출산지원, ---------- 부산광역시양성평등·출산지원 및 청소년육성기금----------.
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출산장려계정	2. 출산지원계정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2조(기금의 용도) ① (생 략)	제42조(기금의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출산장려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	② 출산지원계정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1. 출산장려를 위한 교육비 지원	1. 출산·양육에 관한 지원금
2. 결혼·출산장려사업 관련 단체 등의 지원	2. 임신·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및 지원
3. 결혼·임신·출산·보육 장려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	3. 임신·출산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관련 단체(기관) 등의 사업 지원
4.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	4.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
5. 그 밖에 결혼·출산장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	5.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
	6. 그 밖에 임신·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3조(관리·운용) ①·② (생 략)	제43조(관리·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기금의 집행은 운용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양성평등계정 및 출산	<삭 제>

장려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④ (생 략)	 ④ (현행과 같음)
제45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1. (생 략) 2. 분임기금운용관 가. (생 략) 나. 출산장려계정 : 출산보육과장 다. (생 략) 3. 기금출납원 가. (생 략) 나. 출산장려계정 : 출산장려업무담당사무관 다. (생 략) ② (생 략)	제45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출산지원계정 ---------- 다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출산지원계정 : 출산업무담당사무관 다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